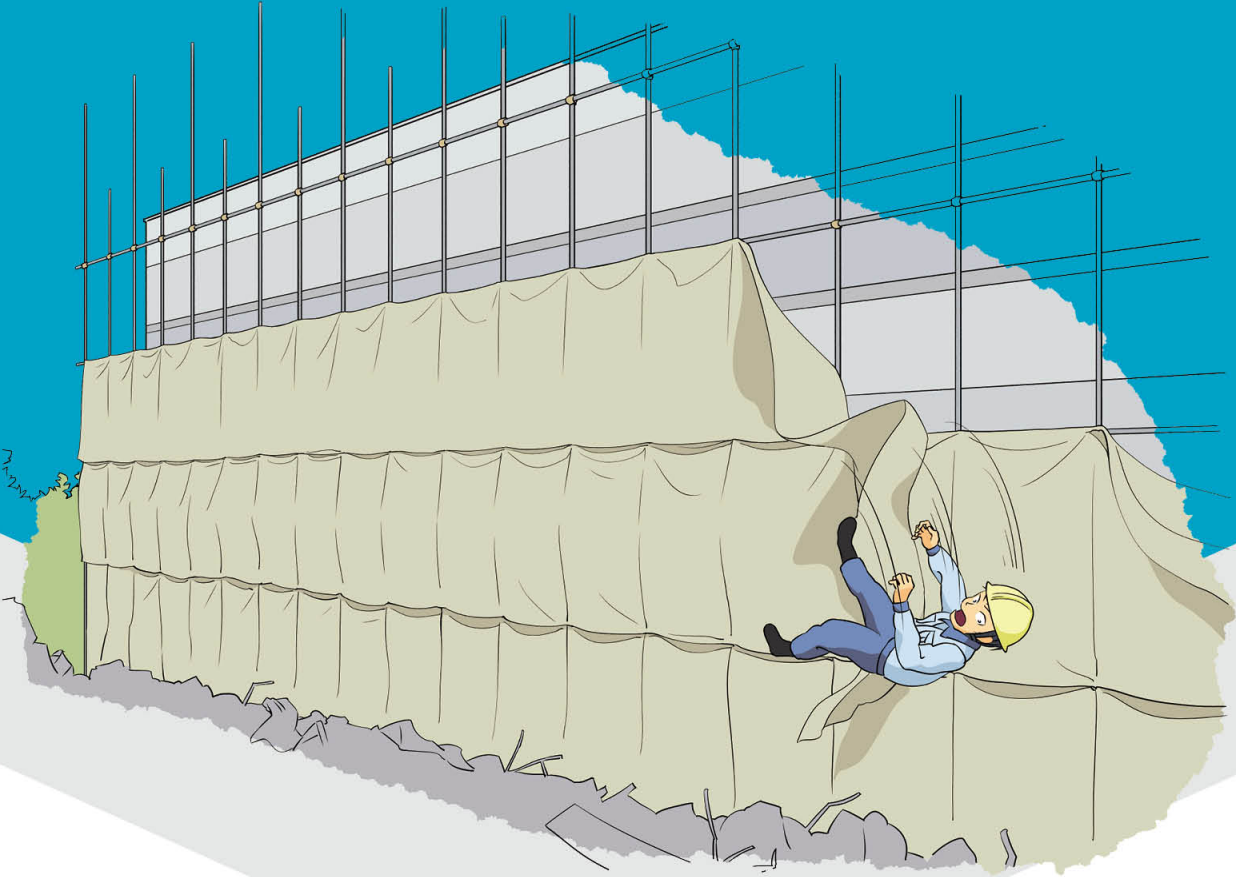




중대재해사태 _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!

분진방지망 해체 중 떨어짐



재해 개요



공장 철거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외줄비계 4단에서 분진방지망 해체작업 중,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.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

재해 발생 원인



- 외줄 비계상 작업발판 미설치
- 안전대 미지급 및 미착용

재해 예방 대책



- 외줄비계상 작업시 작업발판 설치
-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철저

관련 법령

산안법,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KOSHA Guide 등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(작업발판의 구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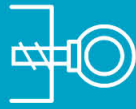


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!

안전보건 VR 전용관
360vr.kosha.or.kr



안전대의 안전 사용



견고한 고정점



혹 체결은 어깨보다 높게



안전대 점검

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지원

• 벨트식 안전대

- 벨트는 추락 시 작업자에게 충격을 최소한으로 하고 추락저지시 발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요골 근처에 확실하게 착용
- 버클을 바르게 사용하고, 벨트 끝이 벨트 통로를 확실하게 통과

• U자걸이 안전대

- 신축조절기를 사용할 때에는 각 링에 바르게 걸어야 하며, 벨트 끝이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
- U자걸이 사용 시 혹은 각링이나 D링 이외의 것에 잘못 거는 일이 없도록 벨트의 D링이나 각 링부에는 훅이 걸릴 수 있는 물건은 부착 금지

• 공통

- 착용 후 지상에서 각각의 상태에서 체중을 걸고 각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
- 안전대를 지지하는 고정점은 로프의 이동에 의해 로프가 벗겨지거나 빠질 우려가 없고 충분한 강도의 구조
- 안전대를 지지하는 대상물에 추락 시 로프를 절단할 위험이 있는 예리한 각이 있는 경우에는 로프가 예리한 각에 접촉하지 않도록 보양 조치

고정점 선정시 고려사항

- 안전대의 혹은 작업자의 가급적 어깨 높이 이상에 체결
※ 2.5m 점줄 사용시 지상 5.75m 높이 이상에 훅 고정
- 추락시 흔들리지 않아야 함(진자운동 형태의 떨어짐 방지)
- 추락시 물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추락 예상 경로에 장애물이 없어야 함

